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014
----------	-------

발의연월일 : 2023. 6. 30.

발의자 : 김미애 · 김정재 · 이종성
지성호 · 이현승 · 서병수
金炳旭 · 장동혁 · 정운천
윤주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업소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 등 제공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 · 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제11

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1”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보호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보호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p>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 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p> <p>② ~ ④ (생략)</p>	----- ----- ----- ----- -----.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